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고발

최근 스마트폰이 보편화 되면서, 아동청소년들이 아무런 거리낌없이, 심지어 성매매가 범죄라는 사실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성매매 현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운영은 더 이상 개인의 자유로운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놓였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성, 알선,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형사고발하여 어플리케이션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하여 전부 시정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1. 실태와 기획의도

가. 성매매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만남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고 있음.

나. 어플리케이션의 경우, 가입이 용이하고, 쪽지를 삭제할 경우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음.

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걸맞는 규제 및 관리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라. 현재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방송통신 위원회에 지속적으로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처리결과가 고무적이지는 않음(미유통, 중복신고 등을 이유로 각하 처분되거나, 일부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처분이 내려졌음).

마.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신고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2016년 1월 기준 39개이고, 현실에서는 더욱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이용되고 있음 (심투,

앙톡, 톡앤, 영톡, 즐톡, 깨톡, 심심채팅, 낯선사간과의 대화, 마약팅, 코코아팅, 심쿵챗, 수클럽, 앙스 바로메이트 미톡, 별별톡 등)

바. 이에 십대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조성, 알선, 유인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형사고발하여 어플리케이션의 행태를 고발하고, 공론화하여 전부 시정하도록 하고자 한다.

2. 일시: 미정, 2016년 9월말~10월 초 중순

장소: 미정

방법:

- 1) 십대여성인권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중 2인의 동의를 얻어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어플리케이션 운영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하고, 이를 동의하는 기관들과 공동으로 고발한다.
- 2) 고소고발장이 작성되면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접수한다.

3. 현재 작성중인 고소고발장을 아래와 같이 첨부한다.

고소 · 고발장

사 건 2016

고 소 인 1. 김 OO

서울 은평구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2. 이 OO

서울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고 발 인

1.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영등포구

대표자 조 진 경

전화: 02-3648-1318

2. 한국YWCA연합회

3. (사)탁틴내일

위 고소인들과 고발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피고소인

1. 성명불상자¹⁾(채팅앱 ‘친구만들기’ 관리자)

1) 각 채팅어플 회사의 대표이사나 관리자를 확인할 수 없어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음. 확인해서 수정할 필요.

2. 성명불상자(채팅앱 ‘심톡G’ 관리자)

피고발인 1. 성명불상자(채팅앱 ‘즐톡S’ 관리자)

2. 성명불상자(채팅앱 ‘앙스’ 관리자)

3. 성명불상자(채팅앱 ‘앙톡’ 관리자)

4. 성명불상자(채팅앱 ‘톡앤’ 관리자)

5. 성명불상자(채팅앱 ‘영톡’ 관리자)

I. 고소·고발 취지

고소인들과 고발인은 피고소인들과 피고발인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²⁾(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합니다)을 위반한 혐의로 각 고

2) 알선행위와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고민하였으나 범죄수익 몰수, 추징과 관련하여 성매매처벌법에 규정이 있어 동 규정 적용을 위해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음.

소 ·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시어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